

# 포항공과대학교 글로컬라이즈 통합사업단 운영 규정

제정 2025.10.28.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교육부 훈령 제 523호)」 및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전략」에 근거하여 포항공과대학교(이하 '포스텍'이라 한다)가 수행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이하 'RISE'라 한다)」에 포함되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설치되는 포스텍 글로컬라이즈 통합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RISE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부(한국연구재단 포함) 및 지자체(경상북도RISE센터 포함), 포스텍의 제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적용하며, 사업단을 포함하여 행정부서와 부속 기관, 학과, 제위원회 등 대학 내에서 RISE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조직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3조(기능) 본 사업단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사업 수행 결과의 보고 및 성과의 홍보와 확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 2 장 조직 및 운영

제4조(조직 및 구성) ① RISE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단은 사업단장을 비롯하여 사업부단장(사업 책임자) 및 사업별 부책임자를 둘 수 있으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 분과별 운영조직, 분야별 부설연구소, 외부협력기관 등으로 구성된다.

② RISE의 책무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의사결정기구 및 자문기구로 글로컬라이즈 추진위원회, 글로컬라이즈 지산학연 자문위원회, RISE 분과위원회(RISE 실무운영위원회 포함), 부설연구소 등을 둘 수 있다.

③ 사업단의 구성은 사업 운영조직과 함께 참여 학사조직 및 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한 협력 기관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참여 학사조직은 포스텍에 소속된 학부 또는 전공, 대학원을 모두 포함하고 외부협력기관은 협약을 통하여 사업단의 구성과 운영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산업체 및 비영리법인 등을 말한다.

제5조(사업단장) ① 사업단의 사업단장은 총장으로 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교육부 훈령 제523호)」 제15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사업단을 통할한다.

② 사업단장의 임기는 RISE 총 사업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사망, 공직 임명, 퇴직 또는 임기 만료, 질병 및 업무태만, 관리 소홀, 기타 사유로 사업단장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단장을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북 RISE 센터의 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사업단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RISE기본계획 및 RISE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한 대학별 계획 수립 및 추진
2. 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에 대한 종합 관리 및 지원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공간시설, 행정 등에 대한 지원
4.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체규정 정비
5. 사업비의 집행,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제5조의2(사업부단장) ① 사업단의 사업부단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사업단 운영의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글로컬대학30 사업과 경상북도 RISE 공모사업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업 부단장의 임기는 RISE 총 사업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사망, 공직 임명, 퇴직 또는 임기 만료, 질병 및 업무태만, 관리 소홀, 기타 사유로 사업부단장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총장은 사업부단장을 교체할 수 있다.

③ 사업부단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RISE 기본계획 및 RISE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한 계획 작성·제출
2. 사업의 총괄 수행
3. 사업비 사용을 위한 발의 및 관리
4.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5.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6. 사업단 자체 운영 규정의 제·개정의 발의
7.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8. 사업 참여 구성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인사 추천
9. 관련 법령의 준수

제6조(운영 조직) ① RISE의 효율적 운영 및 사업관리를 위한 사업 운영조직으로 본 사업단 내 세부사업별 총괄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글로컬라이즈 통합사업단 내 해당 업무의 수행 조직으로 대학 내 직제 규정에 따른 부서 내 사업단별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 제 3 장 위원회

제7조(글로컬라이즈 추진위원회) ① 사업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글

로컬라이즈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교내 외 인사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업 부단장이 되며 교학부총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연구처장, 산학처장, 전략예산팀장, 산학협력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이외의 위원은 사업 관련 분야의 지·산·학·연 전문가 중에서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연임 포함)할 수 있다.

④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RISE 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2. 사업계획서 변경 및 단위과제 간 변경 등 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

3. 지역수요 기반 RISE 사업의 추진 방향 및 우선순위 및 RISE 사업단의 주요한 운영과 성과관리에 관한 의사결정

4. 기타 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 의결사항

⑤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글로벌라이즈 지산학연 자문위원회) ①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의 의견 수렴 및 자문을 위하여 글로벌라이즈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지산학연관에 소속된 교내·외 인사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글로벌라이즈 사업의 성과 제고 및 환류를 위한 자체평가

2. 지산학연 관점에서 사업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한 사업성과 환류

3. 지역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과 사업 개선 방안에 대한 자문 등

제9조(실무운영위원회) ① RISE 공모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RISE 실무운영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학처장이 되며, 산학협력단 소속 부서의 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이외 위원은 사업단장이 임명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 실무 운영 계획 및 운영 전략 수립

2. 사업 예산의 세부 편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일반적인 사업계획서 및 평가보고서의 작성, 과제의 내용 및 수행 방법 결정

4. 3천만원 미만의 연구시설 장비·기자재 도입(구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업실행을 위해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RISE 분과위원회) 글로벌라이즈 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산업 분야, 부설연구소, 지역혁신센터, 산업혁신정책센터 등은 운영에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 4 장 재정 및 회계

제11조(재정) 사업단의 재정은 사업비, 지자체 대응자금, 본교의 대응자금 등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12조(사업비 집행 및 회계연도) ① 사업비 집행 및 회계관리는 교육부와 경상북도의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적용하되,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 자체 규정 또는 지원기관과 협의된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② 모든 사업비의 집행은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관련 증빙서류는 사업 내 증빙 보관기간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③ 회계연도는 사업비 지원기관 협약에 따른 회계연도와 같으며 사업기간 또한 그러하다. 다만, 재원의 성격 및 사업비 지원기관과 지원협약에 따라 사업연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조(사업비 변경) ① RISE의 모든 사업비는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 및 변경이 가능하며, 집행 방법 및 사업비 변경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보조금 관련 규정, 교육부와 경상북도의 사업비 관련 체규정 및 지침 또는 RISE 센터와 협의된 별도의 지침을 따른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하지 않은 내용은 대학의 위임전결기준, 예산 및 회계관리 기준, 연구비관리 기준, 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서 정한 기준 등 대학 자체 기준을 준용한다.

제14조(취득 자산의 귀속) 사업단의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무형 자산의 귀속은 관계 법령 및 관련 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 제 5 장 보칙

제15조(준용 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 훈령 및 경상북도 RISE 관련 규정, 본교 체규정을 준용하되, 사업운영에 필요한 주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규정의 폐지) 이 규정은 포항공과대학에서 수행하는 RISE가 중단 또는 종료된 때 폐지된 것으로 본다.